

의안번호	제 147 호
의결 연월일	2022. 12. . (제 회)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안지윤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2년 월 일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
----------	-----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18일

발의자 : 안지윤,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치영, 조성태,
최정훈, 유상용

1. 제안이유

-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유행, 해외 유입 마약류의 급증 등으로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또한 마약류 투약 후 교통 범죄, 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비밀준수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관련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 호

다. 협 의 : 식의약안전과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사·연구 및 오

남용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약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

3. 관련조문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년~2027년 (5년간)
- 예방계획의 수립 : 자체수립
 - 자체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비용 발생하지 않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기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기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은 명확한 사업 부재 및 지원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추계 곤란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 기 추진 중이며, 매년 추진으로 계획함

나. 추계 결과 : 153,360천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20,000천원 × 5년 = 100,000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향후 5년간 1억원 수반될 예정이나, 기 추진 중으로 신규 수반 해당없음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 1,672천원 × 5년 = 8,360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 9,000천원 × 5년 = 45,000천원 * 2022년 예산 기준
 - ※ 계획수립,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등은 표준화된 분석법 부재 등으로 비용추계 곤란

다. 재원조달방안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 국비 50%, 도비 50%
-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 도비 100%
-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0,672	30,672	30,672	30,672	30,672	153,360	
마약류 중독자치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예방교육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1,672	1,672	1,672	1,672	1,672	8,360	
재원 조달	30,672	30,672	30,672	30,672	30,672	153,360	
의존 재원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보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672	20,672	20,672	20,672	20,672	103,360
	지방세	20,672	20,672	20,672	20,672	20,672	103,3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